

# 大學圖書館司書의 人事制度問題

慶北大學校圖書館  
高 聖 秀

## 1. 緒 論

### 1. 問題의 提起

80年代의 福祉國家의 建設을 위한 國家基本法인 憲法의 改正을 비롯하여 全國家的인 改革이 斷行되고 있으며 國敎民育의 正常化를 위하여 大學入試制度의 改革과 더불어 大學卒業定員制와 大學生의 大幅的인 增員을 ‘공부하는 大學’으로의 教育革命의 大決斷으로 教育現場에도 一大革新이 있으리라 믿어진다.

따라서 大學은 각종 教育施設의 擴充은 물론 優秀한 教授의 充員이 時急한 問題이겠으나 大學教育의 改革은 學生 스스로가 공부하는 研究課題制度로 指向한다<sup>1)</sup>라고 할 때 自律學習의 道場이요 知識의 寶庫라고 하는 大學圖書館의 改善이야말로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現代圖書館의 奉仕는 施設이 5%, 資料가 25%, 職員이 70%가 關係된다<sup>2)</sup>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施設과 東西古今의 學術情報를 收藏하고 있는 大學圖書館이라 하더라도 有能한 職員 없이는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有能한 職員을 確保하는데는 매력적인 人事制度의 確立이 必要하다 하겠다.

### 2. 人事行政의 意義

人事行政이란 行政機關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에 사람을 선발하여 配置하고, 그들의 能力을 開發하고, 그리고 그들의 能力을 維持·活用하는 管理機能으로서<sup>3)</sup>, 모든 行政體制가 發展行政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人事란 發展的인 事業을 推進하는데 제일 重要한 人力을 供給함을 優先順位로 두어야 한다<sup>4)</sup>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의 人事行政을 보다 좋은 사람들을 찾아 政府에서 일 하도록 끌어들이고 그들이 熱心히 일하면서 發展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어 주는 積極的인 役割을 맡도록 要求되고 있다.<sup>5)</sup>

### 3. 職務分析

合理的인 人事制度의 確立을 위해서는 먼저 職務의 內容을 分析하여 그 職務의 特性을 明確히 하여야 할 것이다. 즉, 特定職務를 構成하고 있는 일, 그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作業者에게 要求되는 熟練, 知識, 能力, 責任, 그리고 職務를 기타의 一般職務와 區別하고, 이를 決定하고, 報告하는 節次를 意味한다<sup>6)</sup>라고 하였다.

위의 같은 性格을 볼 때 大學圖書館의 業務分析은 다음과 같은 意義를 가진다고 생각되어진다.

1) 大學圖書館業務의 內容을 明確히 하고 다른 業務와 다른 特質을 明白히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圖書館業務에 關해서 理解가 歐美의 境遇와 같이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業務를 明確히 하는 것은 圖書館全般의 發達을 위해서도 極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2) 業務分析에 있어서는 專門的 業務와 非專門的 業務를 區別함으로써 大學圖書館業務의 高度의 專門的 特質을 明白히 한다. — 이에 따라서 業務分析은 그 業務에 從事하는 專門職員의 身分·待遇 등에 關하여 職階制를 確立하는 등 그 適正한 措置를 圖謀하는 基礎資料가 된다.

3) 이 이외에 大學圖書館의 管理·運營에 있어서 人員, 分掌 등의 配置 및 業務 全般의 改善, 現職教育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sup>7)</sup>

1) 연세대학교,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 운영의 계획과 운영, (1973), p.12.

2) 嚴圭生, “司書職의 人事管理”, 도립월보 Vol.16, No.4, (1975.4), p.12.

3) 張志浩, 新人事行政, (서울: 博英社, 1977), p.13.

4) 朴東緒, 人事行政論(서울: 法文社, 1975), p.14.

5) 吳錫泓, 人事行政論(서울: 博英社, 1975), p.18.

6) 張永健, 職務給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서울: 成均館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3), p.7.

7)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會議, 大學圖書館의 業務分析(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68), p.2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大學圖書館의 業務分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그러므로 1948年の 美國圖書館協會의 「Descriptive List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와 1974年の 英國圖書館協會의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및 日本의 「大學圖書館의 業務分析」 등을 參考하기로 하였다.

4. 大學圖書館의 機能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이 課題를 통하여 能動的으로 自身들의 教育에 參與하게 하며 討論을 準備하기 위하여 圖書館에서 資料를 選擇하고 組織하고 分析하고 評價하며 공부하도록 한다. 그런 過程을 통하여 分別力과 批判能力을 函養하고 ‘혼자 공부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sup>8)</sup> 教授에게는 研究와 調査, 學生들에게는 學習과 教養의 場으로서의 教育的 機能을 가지게 되므로, 司書는 調査 및 研究의 方法에 있어서 學生을 指導하는 하나의 教授로서 일 하게 되며, 圖書館은 教授들의 授業과 研究를 積極的으로 돕는 일을 하게 되는<sup>9)</sup> 教育的 機能과 奉仕의 機能을 가지고 있다.

5. 大學圖書館의 重要業務

圖書館에서 一般的으로 行하고 있는 資料의 蒐集, 整理, 閱覽 및 參考奉仕 등의 業務은 물론, 大學에 있어서 教授와 學生에게 가장 重要한 調査研究活動을 위한 情報提供에 따르는 機能 즉, 蓄積된 資料의 活用을 위하여 각종 文獻의 索引, 書誌의 作成, 抄錄, 摘要 등의 奉仕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여야 한다.<sup>10)</sup> 그와 같은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圖書館學을 비롯한 幅넓은 專門知識도 아울러 要求되어 진다.

6. 大學圖書館 司書의 資質

大學圖書館 司書에게 要求되는 人的 資質의 基準은 아직도 不確定狀態에 처하여 있으나<sup>11)</sup> 專門職司書로서 一般的이고 또 專門的인 知識을 具有하려면은 一般教養 및 語學, 圖書館學, 專攻分野에 必要한 基礎學 및 補助學에 관한 學問의 背景<sup>12)</sup>과 아울러 管理能力<sup>13)</sup>도 있어야 하겠다.

7. 研究의 方法 및 限界

본 研究의 方法은 先行研究의 각종 文獻을 蒐集하여 檢討하였으며, 人事制度의 改善方案은 國立綜合大學校 圖書館에 局限시켰기 때문에 이를 全國大學圖書館司書의 人事制度에 一般化할 수는 없을 것 같다.

II. 國立大學圖書館의 現況과 問題點

1. 現況

1) 圖書館의 職制<sup>14)</sup>

(1) 서울大學校圖書館 :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7조(도서관) ① 圖書館에 收書課·整理課·閱覽課·參考書誌課 및 奎章閣圖書 管理室을 두며, 각 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하고 室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補한다.

(2) 國立大學校圖書館 : 국립학교 설치령 제13조(도서관) ① 圖書館에 收書課와 閱覽課를 두며, 收書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閱覽課長은 司書官으로 補한다.

(3) 國立大學 : 국립학교설치령 제21조(부속시설) ① 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도서관 2. 학생지도연구소...

2) 司書의 職種 및 職級

公務員任用令 [별표 1]<sup>15)</sup>에 의하면, 司書는 16個職群중에서 行政職群의 司書職列에 속하고 있으며, 그 職級은 5級乙類 司書書記補에서 3級乙類 司書官까지로 되어 있다.

3) 司書의 定員

各級學校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規定 [별표]<sup>16)</sup> 국립 및 공립 학교 공무원정원표에 의하면 司書官 4名, 司書 51名, 司書補 84名, 司書書記 76名, 司書書記補 13名, 計 228名으로 되어 있다.

(1) 大學別 定員은 다음 표와 같다.

| 大學     | 職級 | 사서관사 서 사서보 사 서 사서서서서 |    |    |     |    |     | 計 |
|--------|----|----------------------|----|----|-----|----|-----|---|
|        |    | 사서관                  | 사  | 서  | 사서보 | 사  | 서   |   |
| 대학교    |    | 4                    | 41 | 48 | 68  | 13 | 174 |   |
| 대학     |    | .                    | 7  | 11 | 5   | .  | 23  |   |
| 교육대학   |    | .                    | 3  | 10 | 1   | .  | 14  |   |
| 국립전문대학 |    | .                    | .  | 15 | 2   | .  | 17  |   |
| 계      |    | 4                    | 51 | 84 | 76  | 13 | 228 |   |

(2) 綜合大學校의 定員은 다음 표와 같다.

8) 崔成眞, “大學圖書館의 教育的 機能”, 도협월보 Vol.13, No.16(1972.6), p.3.  
 9) M.A. Gelfand, *University Librar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aris UNESCO, 1971), p.25.  
 10) 李應善, 大學圖書館經營의 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3), p.12.  
 11) 柳東烈, 우리나라 大學圖書館行政에 관한 研究, (서울 大學校行政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77), p.12.  
 12) 千惠鳳,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職과 學的 背景問題”, 도협월보 Vol.16, No.4. (1965.4), p.8.  
 13) 柳東烈, 前揭書.  
 14) 문교부전, (서울: 敎學社, 1980년판), pp.92-100.  
 15) 문교부전, 上揭書 p.155.  
 16) 大韓民國現行法令集, 第14卷, 第18輯, 教育·學術

| 大學名   | 職級 |    |    |   |     |   |    | 계  | 임시직 |     |
|-------|----|----|----|---|-----|---|----|----|-----|-----|
|       | 사서 | 서관 | 사  | 서 | 사서보 | 사 | 서기 |    |     |     |
| 서울대학교 | 2  |    | 17 |   | 15  |   | 31 | 8  | 73  | 85  |
| 부산대학교 | .  |    | 6  |   | 5   |   | 9  | 1  | 21  | 19  |
| 경북대학교 | 1  |    | 1  |   | 5   |   | 8  | 1  | 19  | 25  |
| 전남대학교 | 1  |    | 3  |   | 5   |   | 5  | 1  | 15  | 21  |
| 전북대학교 | .  |    | 4  |   | 4   |   | 6  | 1  | 15  | 17  |
| 충남대학교 | .  |    | 2  |   | 4   |   | 6  | .  | 13  | 13  |
| 충북대학교 | .  |    | 1  |   | 5   |   | 2  | .  | 8   | 14  |
| 강원대학교 | .  |    | 3  |   | 2   |   | 1  | .  | 6   | 12  |
| 경상대학교 | .  |    | 1  |   | 3   |   | .  | .  | 4   | 11  |
| 계     | 4  |    | 41 |   | 48  |   | 68 | 13 | 174 | 217 |

※ 임시직원은 定員規定에 없고, 각 대학 도서관현황을 참조하였음.

4) 司書의 定員配置基準

圖書館法施行令 第 6條(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 ①항 3. 實業高等專門學校·初級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大學校의 大學을 除外한다)과 大學校에는 그 學生數가 5백인 이하인 때에는 2인의 司書職員을 두며, 그 學生數가 5백인을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하는 8백인마다 1인의 司書職員을 증치한다.

2. 問題點<sup>17)</sup>

1) 圖書館의 職制

(1) 서울大學校圖書館: 서울大學校는 龍대한 藏書와 組織 및 人員에 비추어 圖書館의 綜合企劃, 調整擔當部署가 없어 有機的인 業務遂行을 못하고 있으며, 각 大學圖書館과의 協力活動이 不振하고, 각 課長은 一般行政職인 書記官이 占職하게 되므로 司書業務의 特殊性이 缺如되고 業務能率이 低調하다.

(2) 綜合大學圖書館(서울大學校 제외): 資料의 整理擔當部署가 없고 行政事務官이 司書專門業務까지 分掌하므로 因하여 業務內容의 不實과 能率이 低調하다.

(3) 單科大學: 職制도 없고 定員配定도 極小數의 下位職 뿐으로 業務의 効率性을 期하기 困難하다.

2) 司書의 職種 및 職級

司書職의 最上職級이 2級乙類로 낮게 規定되어 있어 昇進의 길이 막혀 있고 待遇도 좋지 않음으로 有能한 司書의 確保가 困難하며 現職者의 離職率이 높아<sup>18)</sup> 業務의 內容이 質的으로 低下되고 있다.

3) 司書定員의 不足

綜合大學校圖書館의 司書定員이 174名인데 3級乙類 司書官이 4名 뿐이며, 더욱이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閱覽課長인 司書官이 9個綜合大學에 2個大學에만 定員을 配定하였으며, 正職員 174名에 臨時職員이 217名이나 되는 實情이다. 또한 奉仕對象數가 비슷한 大學間에도 司書職員의 配定이 級數나 定員이 統一되어 있지

않다.

例 '80年度 學生募集定員(大學生除外)

서울大學校 3,315名×4年=13,260名(總學生數)  
 江原大學校 2,250名×4年= 9,000名(總學生數)  
 慶尙大學校 1,800名×4年= 7,200名(總學生數)

司書定員配置基準에 의하면 서울대는 57,300名에게 奉仕할 수 있는 司書 73名이나 江原대는 3,700名, 慶尙대는 2,900名을 奉仕하는데 6名과 4名 뿐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85名의 臨時職員이 있다. 또한 司書(4級甲類) 定員이 全北大學校에 4名, 全南대가 3名, 忠南대 2名, 忠北大·慶尙대가 각각 1名인가 하면은 江原대는 3名이나 되는 實情이다.

4) 司書定員配置基準의 不合理

司書定員配置基準에는 司書職에 대한 配置基準만을 規定하였고 非專門職의 配置나 專門職과 非專門職에 대한 比率 등이 規定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울大學校圖書館의 例를 보더라도 現基準에 의하면 73名의 司書는 57,300名을 奉仕할 수 있는데도 臨時職員이 85名이나 되는 것은 現基準이 너무 낮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藏書數의 增加에 따르는 業務量의 增加를 考慮한 增員規定도 없다.

5) 司書職手當의 問題

司書職의 業務內容은 專門知識과 豊富한 經驗이 要求되는 特殊職임에도 不拘하고 昇進의 길이 막혀 있으며 産業發達로 因한 企業體資料室 要員의 需要가 激增함에 따라 司書의 離職率이 漸增하고 있음은 물론, 圖書館學教育을 받은 優秀한 司書가 大學圖書館에 就業을 기피하는 現實이라 司書職手當의 復活이 있어야 하겠다.

이상이 現在까지 國立大學圖書館에서 論議된 問題點이라 하겠다.

Ⅲ. 大學圖書館制度改善方案의 先行研究

1963年의 圖書館法이 公布되는 當時부터 問題點이 많아 圖書館協會에서는 圖書館法改正을 政府에 數次 建議한 바<sup>19)</sup> 있으며, 各界의 意見과 論文이 많이 發表되어 圖書館의 職制를 비롯하여 司書의 資格과 任用 및 待遇의 改善를 主張하고 있다. 國立大學圖書館 및 司書長會議에서도 數次 國立大學圖書館運營의 改善를 위한 建議로서 圖書館의 職制와 職種 및 職級 등에 대

17) 第29次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教育正常化에 따르는 大學圖書館 改善方案(案), (釜山大學校圖書館 1980.9.19)

18) 柳東烈, 田在偉, 金基泰 高聖秀 등 諸氏의 主張

19) 韓國圖書館協會, "圖書館法改正案", 도협월보 Vol.20, No.10. 1979), pp.5-21.

한 改正을 要求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現在까지 人事問題에 關하여 發表된 論文은 數十篇에 이르고 있다. 이는 現行人事制度에 問題點이 많다는 것을 實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 몇편을 紹介하면은 柳東烈<sup>21)</sup>, 崔貞泰<sup>22)</sup>, 尹龜鎬<sup>23)</sup>, 한상완<sup>24)</sup>, 金基泰<sup>25)</sup>, 李澤濬<sup>26)</sup>, 李喆珪<sup>27)</sup>, 김영옥<sup>28)</sup>, 田在俸<sup>29)</sup>, 高聖秀<sup>30)</sup> 등 諸氏의 論文으로서 김영옥은 大學圖書館의 職制단을 展開하였고, 李應善, 李喆珪, 柳東烈, 한상완, 高聖秀는 職制와 더불어 專門職司書가 圖書館長까지 昇級할 수 있는 教授職이나 研究職을 主張하였고, 崔貞泰는 文獻研究職을 新設하여 2級乙類까지의 職級으로의 改善을, 尹龜鎬는 司書의 資格 및 教育問題를 理論적으로 考察하였고, 李澤濬, 金基泰는 職制를 行政職群에서 司書職列의 上向調整 또는 學事職群으로 하고 職級 및 待遇를 改善하는 등을, 田在俸은 司書의 待遇를 教授職과 同等하게 하는 待遇改善 問題를 다루었다. 여러 분이 外國의 實例와 理論을 背景으로 設問을 통하여 現實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先行研究論文을 參考로 하여 人事制度의 改善方案을 摸索하고자 하는 바이다.

#### IV. 大學圖書館司書의 人事制度의 改善方案

##### 1) 概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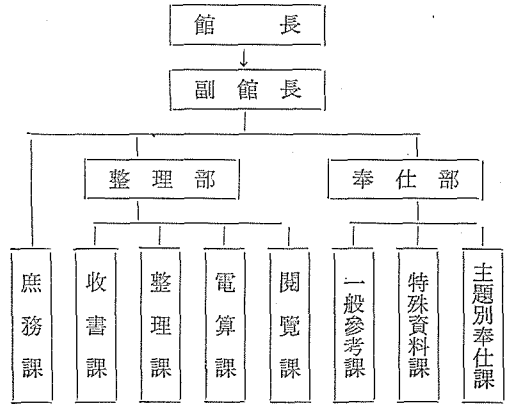
大學卒業定員制와 入學生의 大幅의인 增員과 自律學習으로 인한 圖書館役割의 加增과 機能의 擴大로 現在까지 提示된 職制나 人事問題에 큰 修正이 있어야 하겠다고 思料되는 바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提示하는 바이다.

- (1) 大學圖書館職制의 大單位化와 職種을 改編한다.
- (2) 司書의 名稱과 資格基準을 改正하여 教育專門職으로 하여 教育公務員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다.
- (3) 司書職의 最上級の 定員을 增員改編하여 昇進의 幅을 넓힌다.
- (4) 司書의 定員配置基準을 改善하여 專門職의 增員과 非專門職의 定員도 配置하도록 한다.
- (5) 現職者의 資格取得을 위한 研修와 海外研修의 制度化를 마련한다.

##### 2) 職制의 改編

'85年 경에는 서울大學校의 學生數를 6萬名으로 推算하고 있으므로 餘他的 國立大學校의 學生數도 最低 3萬名은 豫見되어지는데 圖書館의 機構도 大幅의인 擴張이 있어야 하겠으므로, 職制를 다음 圖表와 같이 提示한다.

- 3) 司書職의 名稱과 資格基準을 改正하여 教育專門職으로서 教育公務員法의 適用을 받도록 한다.



- (1) 司書職의 名稱을 文獻研究職으로 改稱하고 資格基準을 따로 定하여 教育專門職으로 한다.

(2) 法的根據의 設定: 教育公務員法 第2條(定義)① 이 法에서 “教育公務員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하고, 3에 「研究機關, 教育機關 또는 教育行政機關에 勤務하는 教育研究官, 教育研士」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文獻研究官·文獻研究士’를 新設한다. ② 이 法에서 “教育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校 또는 機關을 말한다.” ‘1’은 教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各級學校로 되어 있고, 第81條는……다음과 같은 學校를 設置한다.

- ①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
- ② 教育大學, 師範大學
- ③ 專門大學
- ④ …, 으로 되어 있다.

- (3) 文獻研究職의 資格規定: 教育公務員法 第 6 條 (教育專門職의 資格) 教育長·獎學官·教育研究官·獎

20) 第29次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前掲書.  
 21) 柳東烈, 前掲書  
 22) 崔貞泰, “韓國國立大學圖書館의 發展策에 關한研究”, 圖書館學, 第 6輯, 179.  
 23) 尹龜鎬, “大學圖書館의 專門職司書”, 도현월보 Vol.19, No.5 (1968. 6)  
 24) 한상완, “專門司書職의 發展論”, 도서관 Vol.29, No. 9 5 (1974. 5)  
 25) 金基泰, “司書職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向, 도서관, Vol. 29, No.5 (1974. 5)  
 26) 李澤濬, “司度制와 將來” 도서관, Vol.29, No.4(1974. 4)  
 27) 李喆珪, “圖書館의 職制確立과 人事配置”, 圖書館學會誌, 第 3號(延世大學校圖書館大會, 1967)  
 28) 김영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의 일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5)  
 29) 田在俸, 專門職司書의 職務意慾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對한 研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論文, 1977)  
 30) 高聖秀, 大學圖書館職務分析에 關한 研究(啓明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76)

學士는 “公務員任用令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라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 문교법전 [별표]에 “文獻研究職”의 資格基準을 設定한다.

(4) 文獻研究職의 任用: 教育公務員法 第30條(教育監 및 獎學官 등의 任用) ① 教育監·教育長·獎學官·教育研究官은 文敎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라고 하였으나 ‘文獻研究官’을 挿入하여 任命토록 하고, 第31條(校長·校監 및 獎學士 등의 任用)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教育公務員은 文敎部長官이 任命한다.

① 第25條 내지 第27條에 規定한 者를 제외한 敎員

② 獎學士·教育研究士로 되어 있으니 3에 ‘文獻研究士’를 新設하거나 2에 挿入하도록 한다.

(5) 圖書館長의 任用: 大學圖書館長을 文獻研究職인 專門人으로서 任用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措置를 한다.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0조(부속시설의 장),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부속 시설) ④, 제21조의 ② 및 제33조의 ②를 改正하여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장은 敎授 또는 副敎授로 兼보한다를 “부속시설에 各各 長을 두며, 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로 兼보한다. 단, 圖書館長은 文獻研究官으로 補한다”로 하여 大學圖書館長을 專門職으로 補하여 運營管理하도록 한다.

4) 上位職級의 調整

現在 司書의 定員은 機關別로 5級甲類 몇名 4級乙類 몇名 등 職級別로 配定을 하고 있어 昇進할 수 있는 資格이나 勤務年限이 되더라도 上位職級의 定員에 묶여서 昇進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敎授職과 같이 定員配定만 하면은, 資格이 있고 또한 勤務年限이 되면은 助敎授에서 副敎授로, 副敎授에서 敎授로 昇進하듯 文獻研究職도 新規採用이든 現職者의 昇進이든 關係 없이 그 資格이나 經歷 및 勤務年限에 의해 上位職級으로 昇進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976年 圖書協會에서의 圖書館改正(案)의 第27條(職員) 大學圖書館에는 敎授待遇의 專門司書와 司書를 두어야 한다<sup>31)</sup>라고 하였고, 1979年의 圖書館協會의 改正案의 第30條(職員) 1) 大學圖書館長은 正司書(1級) 資格證을 所持한 者로 補한다. 2) 前項의 職員中 正司書(1級)에 대하여는 大學의 敎員에 相應하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하였으며<sup>32)</sup>, 그 資格基準(改正案)에는 碩博士의 學位가 要求되어지고 있는바 全圖書館人을 代辯하는 協會의 案이라 매다수의 司書들의 意見を 集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最高의 學問의 水準이 要求되는 資格으로 學歷에 制限을 두지 않는 一般職으로서의 任用은 專門職으로서 問題가 있으며, 教育研究職보다도 敎授職으로서의 任用과 待遇가 바람직 하다 하겠으나 于先 試案으로 教育研究職으로서 圖書館專門職의 人事問題를 다루었음을 밝힌다.

5) 文獻研究職 定員配置基準의 改善

圖書館法施行令 第 6條(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기준)을 改正하여 定員을 增員하도록 하고 非專門職의 定員規定도 新設하도록 한다. 改正試案<sup>33)</sup>으로서

(1) 學生數 10,000名, 藏書數 50,000권을 基準으로 最低 文獻研究職 10名의 職員을 두되 學生500名마다 文獻研究職 1名, 藏書 20,000권마다 文獻研究職 1名을 增員토록 한다.

(2) 專門職 對 非專門職의 比率을 1 對 2가 되도록 調整한다.

6) 現職者의 資格取得研修 및 海外研修의 制度化

(1) 文獻研究職으로 職種이 改編되므로 資格基準이 높아지게 되어 現職司書들의 資格을 取得할 수 있도록 教育機關에서 資格研修를 實施한다.

(2) 現在 實行하고 있는 大學敎授 海外研修와 같은 機會를 文獻研究職에게도 부여하도록 한다.

V. 要 約

大學圖書館은 그 大學의 教育和 研究目的을 遂行하기 위한 重要한 知的資料源으로 學生, 敎授 및 研究者가 그들의 教育和 研究에 必要한 資料를 滿足스럽게 利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는데 있다.

이제 大學의 敎授는 물론, 學生들도 過去의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學問姿勢에서 能動的이고 積極적인 姿勢로 變遷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認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에게 圖書館이 더 없이 必要한 곳임을 眞實히 느끼게 될 것이며, 大學의 研究道場이 圖書館임을 實感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날의 圖書館利用者數 보다 그 利用者의 質이 앞으로의 利用者의 量的 質의 水準을 상회할 것이다. 이에 大學圖書館은 利用者의 量的 增大와 質의 水準의 高度化에 對處하기 위한 諸般與件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研究에서는 圖書館의 機能을 充實히 發揮하기 위하여서는 職制의 改編과 人事制度의 改善이 基本的인 要因으로 보아 現實의 提議되는 問題點 즉, 國立大學校圖書館의 職制上의 問題點司書職의 職種과 職級 및 定員配置의 問題點을 各種文獻을 檢討하여 우리나라 實情에 맞고 綜合大學校圖書館司書의 人事에 適合한 制度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첫째, 國立學校設置令의 改正方案

둘째, 司書職의 教育研究職으로 任用

셋째, 圖書館法등의 改正方案

이와 같이 하여 大學教育의 中樞의 機關인 圖書館職員을 教育研究職으로 待遇를 하는 人事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며 앞으로 大學圖書館司書의 人事制度 確立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1) 圖書館法, 改正案, 韓國圖書館協會[1976]  
32) 編輯室, “圖書館法改正(案)”, 도협월보 Vol.20, No.19 (1979.12), pp.12-18.  
33) 第29次 全國國立大學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前掲書.